

##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1997년 11월 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위함.

### 2. 주요골자

아래 재산을 신수동 동청사(별관)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					
1	대	신수동 345-1	(대지: 148. <sup>00</sup> , 건물: 319. <sup>69</sup> )	700,000	2/4분기	신수동 별관청사	마포구 신수동 345-1 김종한	매입

### 3. 근 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35조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1995. 1. 5 법률 제4,868호) 제77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 제84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1997.5.17 조례 제363호) 제36호, 제37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4.9.15 규칙 제186호) 제29조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1 부.

# 구유재산관리계획

## '98년도 관리계획총괄표(6-1)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	808.00	1,668,154			3	808.00	1,668,154	
		건물	1	319.00	231,846			1	319.00	231,846	
		기타									
	1.매입	토지	3	808.00	1,668,154			3	808.00	1,668,154	
		건물	1	319.00	231,846			1	319.00	231,846	
		기타									
2.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매입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 '98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6-2)

회계명: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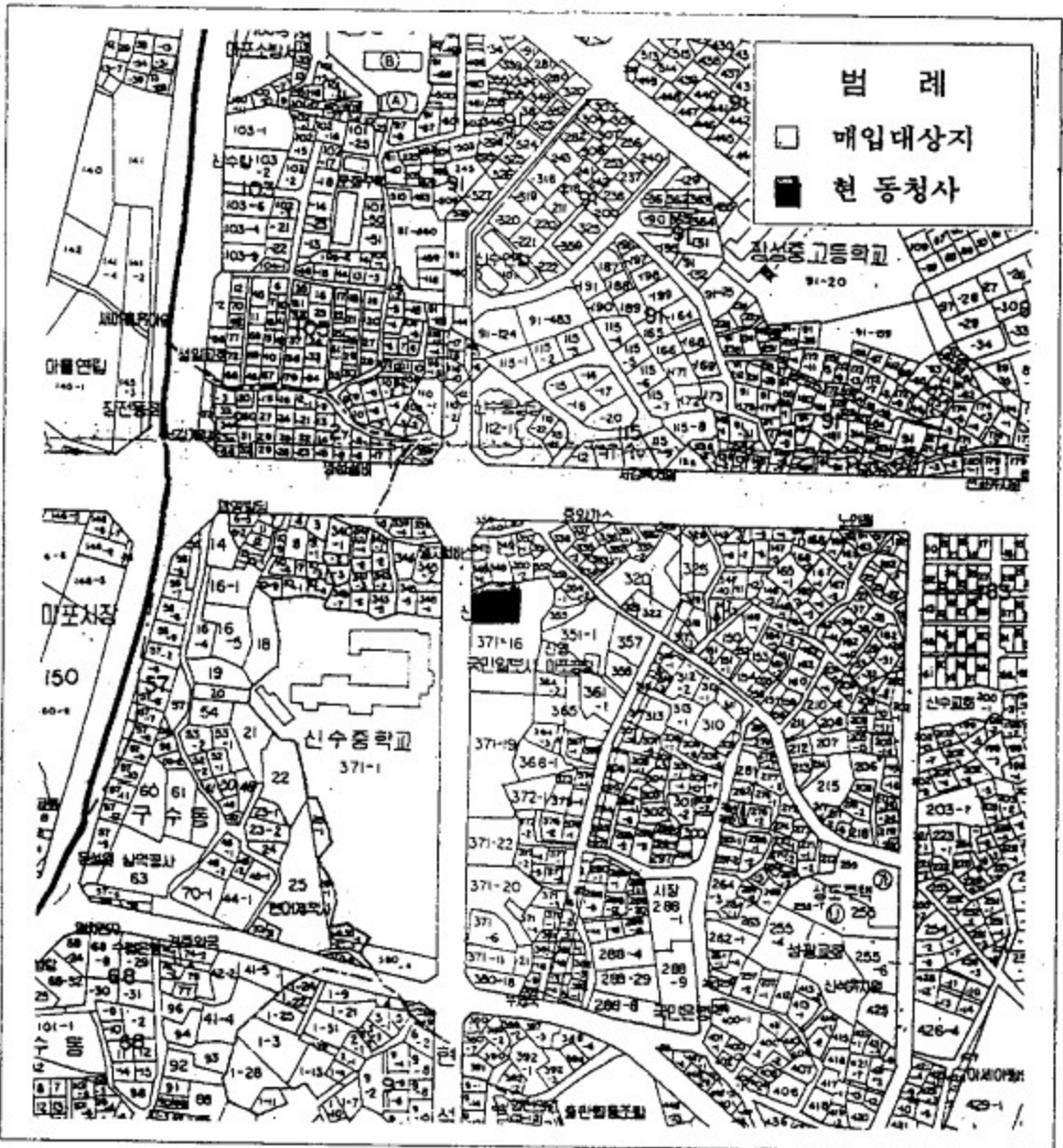
(단위:m',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재지 면적 (㎡)					
1	대	신수동 345-1	(대지: 148. <sup>00</sup> ,건물: 319. <sup>59</sup> )	700,000	상반기	신수동 별관청사 345-1 김중환	복수감정기관 의 감정가액 산술평균치 가격을 기준 으로 협의취득 예정

# 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도

## ■ 마포구 신수동 345-1

- 대 지 : 148㎡ (44.76평)
- 건 물 : 철근콘크리트 경스라브 위 기와
  -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 연면적 : 319.59㎡ (96.67평)



고유번호	1144011100-10345-0001		도면번호	7	발급번호	971029-0149-01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장 번호	1-1	처리시각	16 시 04 분 42 초	
지 번	345-1	축 척	1:1200		비 고	작성 자	김은영 ㉠

## 토 지 대 장

토 지 표 시			소 유 권					
지목	면 적(m <sup>2</sup> )	사 유	변 동 일 지 번 동 원 인	주 소	상 영 또는 영 침	소 례 목 번 호		
(08) 대	*148*	(20)1978년12월26일 분할되어 본번에 -7 윤부합	1980년 6월 4일	345-1				
		이 하 여 백	(03)소유권이전	김종현				
					이 하 여 백			
등 록 수 정 년 월 일	1985. 7. 1	1989. 1. 1	1990. 1. 1	1991. 1. 1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수정 198	수정 201	수정 209	수정 213	수정 220	수정 224	수정 229	수정 235

토 지 대 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 본 입니다.

1997 년 10 월 29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수입종지가 전부 소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건축물관리대장				비고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45번지외 1호				대지면적	허가년월일	준공년월일	등기년월일		
						86. 7. 2	87. 6. 13	87. 6. 16		
건 축 물 관 리 대 장						소 유 권				
구조	주요도	층				사유	반동원자	소유자주소	주민등록번호	
		면적					처리일자		처리일자	상업또는상호
지	상	1층	2층	3층	4층	신축	신수동	345외 1	김영한	
		㎡ 17	㎡ 73.12	㎡ 37	㎡ 51					
계		총				87. 6. 16				
㎡		319.59								
<p>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45번지외 1호 (대중음식점) 일층은 근민생활시설(주거지) 이층은 근민생활시설(사무소)임. 사층, 사층, 주막임.</p> <p>사기 1997년 10월 29일</p> <p>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p>(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할 증명은 그 효력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p>										

77

제 동역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한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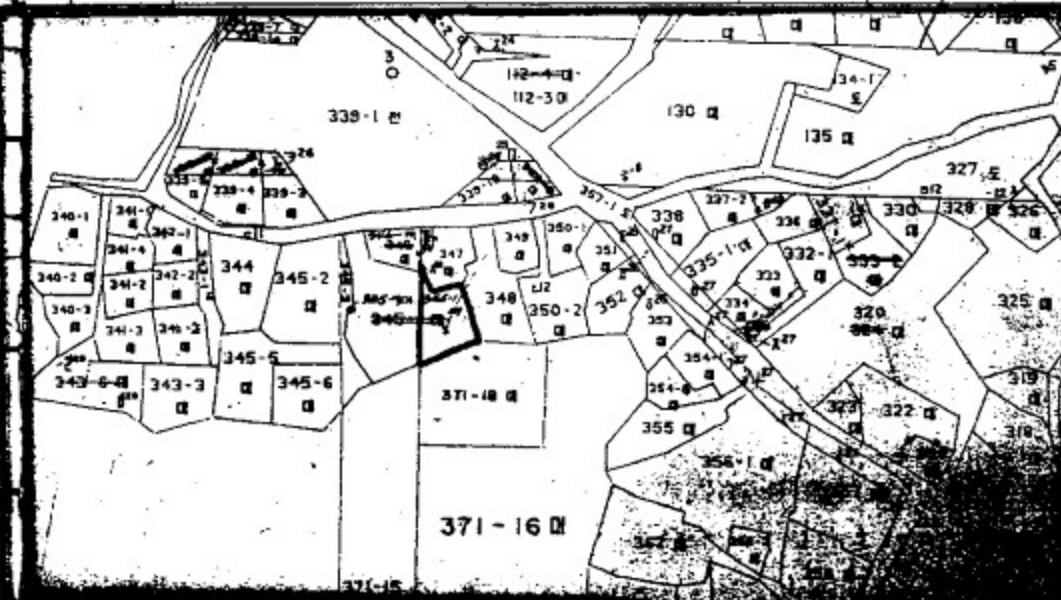
대 상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49동 345번지

확 인 내 역	①국토	용도지역	도시개발계획동의 수일여부
	②(1)	용도지역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 (중심, 일반, 관공, 유흥)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준) 상업지역 (보건, 생산, 자연) 녹지지역
	시	용도지구	종치, 미관(1, 2, 3, 4, 5중), 아파트, 방화, 도시설계고도(최저, 최고), 기타
	계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축, 접합), 지정계건축선(저축, 접합), 하천, 공원, 시장, 학교, 녹지, 광장, 기타
	내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시가지조성, 기타

③-⑦ 군사시설, 중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해당없음.

⑧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당없음; 축적: 500, 600, 1200, 3000

기타: 드면호수



본 드면으로는 면적측정 및 측량을 할수없습니다.

이하에 신청한 사항, 현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임을 증명합니다.

1999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인)

본 확인서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997. 11. 11.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1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4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7. 11. 1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은 규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 나. 주요 개정골자

아래 재산을 신수동 동청사(별관)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임.

일련 번호	재 산 포 사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1	대	신수동 345 - 1 대지:148.00 건물:319.59	700,000	2/4 분기	신 수 동 별관청사	마포구 신수동 345 - 1 김 종 환	매입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물은 지방재정법제77조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수동사무소 별관 청사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수동 345-1호상 대지 148㎡ (약 44.76평)과 지하1



층, 지상4층의 연면적 319.59㎡(약 96.67평)의 건물을 98년도에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 당초 계획은 토지 2건에 660㎡, 추정가액이 12억원이었으나, 동 계획의 변경으로 토지 3건에 808㎡와 건물 1건에 319.59㎡, 추정가액이 19억원으로 동 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임.

○ 신수동사무소 청사는 '94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증축하고자 했으나, 관계법규에 부적합하여 증축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별도 대책을 강구중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97.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 7억원을 투입하여 별관청사를 매입하기 위한 투자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별관 청사 예정부지는 현재 신수동사무소와 접해 있어 사용에는 편리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만적 위원) : 신수동 동청사 별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 변경(안)의 신수동 345-1호상의 재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데, 지금 신수동 현 청사의 상황은 어떠한 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현 청사는 지상2층 건물로 1층에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가 함께 업무를 보고 있으며, 2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장소가 협소한 상태임.
- 질의요지(정만적 위원) : 현 청사건물에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 지?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현 신수동 청사는 88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안전진단결과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임.
- 질의요지(정만적 위원) : 관공사의 대부분이 대체로 부실공사가 많은데 철저한 공사감독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많은 행정변화에 따라 동사무소 청사 확장은 거시적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 데 주관과장의 견해는?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앞으로 관공사의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며, 동청사의 신축 및 증축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요지(한수권 위원) : 별도의 재산을 매입하지 않고 현청사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 신축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주관과장의 견해는?

○ 답변요지(홍 기 총무과장) : 좋은 의견이나 실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시에  
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